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6. . . (제 회)	

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
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
조례안

제 출 자	지역보건과장
제출 연월일	2016. . .

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강북구 구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상담료(본인부담금 면제)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조례를 제안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의료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 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진기관의 선정 및 지원대상, 지원 내용, 검진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.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
- 라. 정신건강검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 · 운영(안

제8조, 안 제9조)

마. 검진비 환수 및 검진기관 지정 취소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1) 「의료법」 제 27조

2) 「정신보건법」 제 2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6. 03. 18 . ~2016. 04. 07 .)

2) 부패영향 평가 결과, 개선권고 의견반영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개선권고 의견반영

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(이하 "정신건강검진"이라 한다)"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"구"라 한다) 만 50세부터 만 59세까지의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.
2. "정신건강검진비(이하 "검진비"라 한다)"란 정신건강검진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.
3. "정신건강검진기관(이하 "검진기관"이라 한다)"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고,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,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
2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

제4조(검진기관의 선정)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절차에 의해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 대상)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50대 구민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으로,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내용)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)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내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검진기관명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지원 대상자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료내역
3. 검진비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매달 검진기관에 지급한다.

제8조(지역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정신보건법」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

특별시 강북구 기초정신보건심의(심판)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
2. 정신보건전문요원
3.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
4.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5.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지역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⑥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정신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초정신보건심의(심판)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따른다.

제9조(지역협의체의 기능)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

2.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
3.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,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
4.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환수조치 등)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 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- ②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의료법 제27조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 제3항

③ 누구든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나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,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·알선·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.

<개정 2009.1.30., 2010.1.18., 2011.12.31.>

1.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

□ 정신보건법 제 27조(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)

①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,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. 다만,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·군·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08.3.21., 2010.1.18.>

② 제31조,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

둔다.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21.>